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12 발의연월일: 2025. 4. 7.

발 의 자 : 용혜인 · 김남희 · 소병훈

김영환 • 박상혁 • 한창민

김영배 • 이훈기 • 서미화

김재원 · 김종민 · 김성환

이수진 · 김준형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15년의 범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.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별도의 심의 절차가 없어,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. 실제로 대법원은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을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.

뿐만 아니라, 정보공개소송에 따른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이관, 보호기간 지정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사 례가 빈번하게 발생함.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보공개 결정이 내 려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,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은 '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라'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보호기간을 지정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.

그 외에도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 규정,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규정등이 부재해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.

이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, 궐위 시 지정권자 등을 법률로 규정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, 비공개 분류,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,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에 전문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(안 제17조제1항).
- 나. 대통령 궐위 시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 도록 함(안 제17조제2항 신설).
- 다. 대통령기록물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의

이관,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함(안 제17조의2 신설).

- 라. 대통령의 궐위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20조의2).
- 마.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파면된 경우 등은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함(안 제18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통령은"을 "대통령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대통령 궐위 시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의2(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) ① 제11조에도불구하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이후 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사실이 확정된 대통령기록물은 정보공개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.
 - ② 제17조에도 불구하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다. 이 경우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

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.
- 1.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
- 2.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
- 3.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 청한 경우
- 4.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

제20조의2의 제목 "(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)"를 "(대통령 궐위 및 사고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궐위된"을 "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행 제17조(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 제17조(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 호) ①대통령은 전문위원회의 호)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 심의를 거쳐 -----기록물(이하 "대통령지정기록 물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열람 · 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 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 (이하 "보호기간"이라 한다)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1. ~ 6. (생 략) ② 대통령 궐위 시에는 중앙기 <신 설> 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 을 지정한다. ③ ~ ⑦ (현행 제2항부터 제6 ② ~ ⑥ (생 략) 항까지와 같음) <신 설> 제17조의2(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된 대통령지정기록물) ① 제11 조에도 불구하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 라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

제18조(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 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사실이 확정된 대통령기록물은 정보공개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.

② 제17조에도 불구하고 「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」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 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다. 이 경우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 공개 청구에 대 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 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제18조(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.

1.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

④·⑤ (생 략)

② (생략)

퇴임한 경우

- 2.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

 경우
- 3.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
- 4.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경우
- <u>⑤</u>·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)

1 6 6 /
제20조의2(대통령 궐위 및 사고
시 대통령기록물 관리) ①
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
무를 수행할 수 없는

② (현행과 같음)